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개선 방안 모색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현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올바른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서로의 관점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년 6월 20일 목요일

10:00 - 11:30 열림홀

Program

개회 소개 및 인사말
10:00 - 10:05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발제 발제
10:05 - 10:45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토론 토론 1
10:45 - 11:00 박순혁 작가

토론 토론 2
11:00 - 11:15 이영환 계명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토론 토론 3
11:15 - 11:30 이지은 대한변협 금융변호사회 회장

찾아오는 길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9
산림비전센터 7층

문의처

Tel. 02. 3774. 5009

[발제문]

금융투자소득세 개선 방안 모색

송헌재(서울시립대)

자유기업원

2024년 6월 20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현행 과세체계

- 금융투자소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주식,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등의 펀드, 채권을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현행 제도하에서는 각각 다른 소득의 범주에 포함
-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에 포함되어 상장법인의 대주주, 비상장법인,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이 과세 범위에 포함
- 대주주의 범위는 2021년을 기준으로 코스피 기준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지분을 1% 이상인 경우¹⁾.

1)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

- 세율은 보유기간, 상장 여부 등에 따라 10~30%이며, 국내와 해외주식 간 손익을 통산하고,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
- 파생상품도 양도소득에 포함되며, 주가지수와 관련된 국내 및 해외의 파생상품이 과세 대상
- 주가지수와 관련되지 않은 개별 종목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과 관련된 파생상품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 세율은 10%이며 파생상품 간에 손익을 통산하고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K-OTC/비상장주식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지분율	1% 이상	2% 이상	4% 이상	4% 이상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67조의 8

- 펀드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구분하고 펀드의 매매차익에 대해 14%(지방소득세 포함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
-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총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 국내 주식형 펀드는 비과세하며 펀드 상품 간 손익 통산이나 기본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채권은 채권을 보유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익에 대해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나 채권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금융투자소득세 개편 내용

	현행(2021년 기준)	금융투자소득 신설 이후(2025년 시행)
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주주 및 비상장법인 주식: 10~30% - 파생상품 양도소득: 탄력세율 10% - 펀드(집합투자기구) 양도소득: 14%¹⁾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 국내 주식형 펀드 비과세 - 채권 양도소득: 비과세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 통합과세 시행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 25%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공제: 주식 250만원 파생상품 250만원 - 손실이월공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공제: 국내 상장주식 등²⁾ 5천만원 기타 금융투자소득 250만원 - 손실이월공제: 5년
손익통산	- 국내와 해외주식 간 손익통산	- 금융투자소득 내 손익통산 허용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세수 효과 추계

(단위: 조원)

		2014	2015	2016	2017	평균
증가분	금융투자소득세	4.2	6.2	3.9	5.5	5.0
	지방소득세	0.4	0.6	0.4	0.5	0.5
증가분 계(A)		4.6	6.9	4.3	6.0	5.4
감소분	거래세	2.2	3.3	2.9	3.1	2.9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포함)	0.6	0.9	0.8	1.2	0.9
감소분 계(B)		2.8	4.2	3.7	4.4	3.8
차이(A-B)		1.8	2.6	0.6	1.6	1.7

자료: 신우리·송현재(2021)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 새로운 세금을 도입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함
- 한번 시작한 세금은 폐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도입의 목적과 명분이 분명해야 함
- 세금 감면 혜택을 폐지하지 못하는 것과도 같은 이치임

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해야 하는가?

- 금융투자소득도 소득이므로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것을 정상화한다는 취지
- 소득원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다를 수 있으나 비과세하는 경우 이에 대한 명백한 근거와 논리가 있어야 함
- 조세부담의 수평적 형평성 측면에서 과세가 필요하다는 논리

왜 금융투자소득은 지금까지 비과세였나?

- 부동산 양도소득은 과세해 왔는데 심지어 손익 통산을 하지 않고 물건 별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음
- 부동산 양도소득은 한정된 자원인 땅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임
- 국가가 부동산 소유자의 권리를 안정적으로 지켜주고 인프라 투자로 편익의 크기를 높여줌으로써 추가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를 소유주가 납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부동산 매매차익은 온전히 부동산 소유자의 소득임

- 손익 통산을 하지 않는 논리는 부동산 가치 하락에 정부의 귀책이 없기 때문임
- 금융투자소득은 기업의 미래 수익성 기대에 대한 과세임
- 부동산과 달리 주식은 수익 창출의 주체(기업)가 따로 있음
- 기업은 현재의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음
- 주가는 기업의 미래 가치 상승 기대치의 현재가치임
- 주가에 반영되는 미래 가치는 법인세 납부 후 기업의 세후 소득임

-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이유는 기업이 손실이 난 경우 향후 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때 이전의 손실을 공제해 주는 논리가 적용되기 때문임
 -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은 주주가 이미 법인세를 납부한 소득에 대해 재차 과세하는 이중과세의 성격이 있음
 - 단일한 소득원에 주주가 두 번 납세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그동안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가 없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면 이중과세 문제를 다소간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한 논리임
-
- 한편, 현재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납부하는데 부동산처럼 주식 소유권을 정부가 보호하는 대가로 거래세를 납부하게 하는 것이라면 매입할 때 부과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바람직함
 - 한편, 재산세는 부동산 사용으로 얻은 편익(사용가치)에 대한 대가를 정부에 납부하는 것이고, 취득세는 거래가 안전하게 이루어져서 정부가 소유권 이전을 공식화해 준 것에 대한 대가임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한다면 왜 지금 시작해야 할까?

- 세수 부족 상황에서 부족한 세수를 보충할 수 있음
- 이미 4년 전에 도입하기로 했으니,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시행

금융투자소득세의 당장 시행을 고민해야 하는 경제학적 논리는?

- 금융소득과세는 투자에 대한 과세임
- 투자가 위축되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투자에 과세하는 것보다 소비에 과세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함
- 형평성을 추구한다면 이자, 배당소득에 과세하고 있으므로 같은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 다만 배당소득과 금융투자소득의 세율이 기업의 수익성이므로 이 또한 이중과세 문제에서 벗어나 있지 않음
- 원칙적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도 세전 이익에서 배당을 차감한 이후 과세해야 함
- 국민이 효율성과 형평성 가치 중 어디에 더 가중치를 두느냐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과세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임
-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초저출산으로 인해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효율성에 더 높은 가중치는 두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금융투자소득세를 지금 시행하면 안 되는 이유는?

- 도입 이후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미진함
-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도입 시기와 세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지금까지는 세수 추계 정도만 되어 있는 수준임
- 정부가 그동안 왜 금융투자소득세 부과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며 이는 비판받아 마땅함

자본이득세가 주식시장의 주가 총액에 미치는 영향 분석

-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 진행
- OECD에서 제공하는 taxes on financial and capital transaction 변수에 자본이득세(taxes on capital gains)가 포함되어 있음
-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지표로는 세계은행에서 제공하는 2015년 기준 달러로 환산한 모든 상장사의 시가총액을 이용
- 분석 기간은 1995년-2019년

<표> 자본이득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주가 총액		ln(주가 총액)	
	고정효과 모형	Dynamic Panel 모형	고정효과 모형	Dynamic Panel 모형
자본이득세	111.0* (65.14)	-18.89 (19.13)	0.0127 (0.0157)	-0.0254** (0.0119)
전기 주가 총액		1.274*** (0.0141)		0.460*** (0.168)
1인당GDP	0.0229 (0.0382)	0.00344 (0.00897)	1.42e-05 (1.53e-05)	2.51e-05 (2.33e-05)
M1	-35.99 (27.51)	-3.734 (2.310)	0.00775* (0.00396)	-0.000438 (0.00368)
이자율	2.494 (4.414)	-2.511 (2.657)	-0.0339*** (0.00415)	-0.000807 (0.00556)
물가	-19.02*** (6.830)	-16.39* (9.151)	-0.000491 (0.00488)	-0.000637 (0.00271)
Observations	143	80	143	80
Number of country	31	29	31	29

*** p<0.01, ** p<0.05, * p<0.1

괄호는 강건한 표준오차임

- Dynamic Panel 모형 추정 결과에 따르면 자본이득세가 증가하면 5% 유의수준에서 주식시장 주가 총액의 성장률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음
- 다만 추정 모형에 따라 일관된 결과를 얻지 못했고, 자본이득세에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한 세수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결과를 온전히 금융투자소득세의 영향이라고 볼 수는 없음
- 그렇지만 금융투자소득세도 자본이득세의 일부이므로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부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결과를 이해할 수 있음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다른 대안은?

- 가장 간편한 대안은 금융투자소득을 기타소득에 포함하여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 필요경비 60%를 제하고 40% 소득에 대해 과세함
- 세법을 단순하게 개정하여 과세할 수 있음
- 굳이 5,000만 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과세하는 차별성 논란도 벗어날 수 있음

-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원천징수도 간편하며 종합소득 신고를 통해 손익을 통산하여 정산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 장점이 있음
- 다만 반복적인 투자 행위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기타소득의 취지에 안 맞을 수 있음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대한 제언

- 이미 과거에 정치권에서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결정한 사항이므로 이를 전면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그러나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면서 이러한 세제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얼마나 미치게 될지 분석하지 않은 채 시행을 시작하는 것도 절대 옳지 않음
- 내년 시행을 유예하고 이에 관한 풍부한 연구를 해본 후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세제 설계를 다시 해서 시행할 것을 제안함

[토론 1]

< 금투세 폐지 발표문 요지 >

박순혁 작가

1. 금투세는 아래 세 가지 이유로 폐지 되어야 함

- 1) 조세정의에 어긋남
- 2) 세수가 오히려 감소
- 3)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

2. 조세정의에 어긋남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은 늘고

초부자들인 사모펀드 수익자의 세금은 절반으로 준다

기관 외국인 법인은 해당이 없으므로 투자용 법인 설립 붐 발생

이는 대한민국 금융시장을 부자들만의 전유물로 만들고 서민과 중산층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박탈하는 것

3. 세수가 오히려 감소

60조원 사모펀드 세율이 절반으로 인하될 경우 8조원 세수 감소

대만의 사례처럼 거래가 1/5로 줄어들면 거래세 6.4조원 감소

금투세 +1.3조 (민주당 추산) 사모펀드 세금 -8조 거래세 -6.4조로 오히려 세수는 -13.1조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

4. 심각한 부작용 우려

- 1) 금융시장 활력 감소로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심대한 악영향
- 2) IPO 시장 위축에 따라 벤처산업 생태계 절멸
- 3) 고위험 회사채 시장 축소로 건설사 등 다수 기업 부도 가능성, 이에 따라 실업자 양산 및 금융 시스템 위기로 전이 가능성

[토론 2]

“금융투자소득세 개선방안 모색” 토론문

이영환(계명대 교수)

I. 조세정책

- 세금(稅金)의 세(稅)를 한자로 풀이하면, 벼 화(禾)와 바꿀 태(兌)가 합쳐져 만들어졌음
 - 원래의 뜻은 과거 농경사회에서 수확한 곡식 중 일정 부분을 관청에 바치는 것임
 - 고대에서 세금은 하나의 의무였음
 - 나라와 백성은 군주의 소유물이었음
 - 왕이 곧 나라인 상황에서 백성은 싫어도 힘에 억눌려 세금을 부담할 뿐이었음
 -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은 죽음과 세금뿐임
 - 세금에 관해서는 사람마다 입장이나 관점이 다름
 - 재산 유무, 소득의 다소, 가치의 차이 등에 따라 말과 행동이 수시로 변함

- 그러나 본질적인 조세의 역할은 변함이 없음
 - 우리 인류의 생존 양식은 소위 집합적인 소비라는 사회적 특성을 가짐
 - 집합적 소비를 위한 자원조달의 주요 형태 중 하나가 조세임
 - 구체적으로 조세의 본질적 역할은 공공재의 공급비용을 구성원이 분담하는 것임
 - 우리 인류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러한 역할을 다양한 형태의 조세가 수행하고 있음

- 그렇지만 조세의 시대적 역할이 조세의 본질적 역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이유는 조세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 공급비용을 조달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수적 기능들도 수행하기 때문임
 - 조세는 누가, 얼마를,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를 정해줌
 - 이때 누가, 얼마를, 어떻게 부담하는가에 따라 납세자들의 행태가 달라지고, 납

세 이후의 상태도 달라짐

- 이와 같은 원리를 정치·경제·사회적 목적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부들이 활용하기 시작함
- 오늘날 이러한 요소들이 조세정책의 보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따라서 조세의 시대적 역할은 바로 이러한 조세의 역할들을 달성하는 것과 관련된 당위적 역할을 의미함

II. 최근 동향

- 최근 대통령실에서 연초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라 함)의 폐지, 종합부동산세 폐지, 상속세 인하 등 조세개편 방안을 밝힘
- 2022년 금투세 시행 유예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주가와 시장이 얼어 있는 지금 굳이 민주당이 금투세를 추진해야 하는지?"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음
- 물론 이러한 발언이 진심인지? 선거용 멘트인지는 알 수 없음
- 지난 4월 총선 이후, 2년 유예된 금투세는 예정대로 2025. 1 시행될 것인지?
- 지난 코로나 팬데믹 때 돈을 그렇게 뿌려대고, 무분별한 복지정책을 펼쳐 재정이 파탄지경인데, 나라의 곳간은 어떻게 메울 것인지?
-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국가경쟁력을 키울 것인가? 아니면 영화 기생충처럼 갈라치기로 무의미한 싸움을 할 것인가?
-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은 이미 선택(???)해 버렸음

III. 발제 내용

- 발제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함
- 특히, 새로운 세금을 도입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
- 이유는 한번 시작한 세금은 폐지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도입목적과 명분이 분명해야 함
- 비슷한 예로 각종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거나 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고 있음
- 왜? 지금까지 금융투자소득이 비과세였는지? 부동산 양도소득과 비교한 내용과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문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인세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 등등은 모두 동의함

- 금투세를 도입한다면 왜? 지금 시작해야 할까?
- 금투세의 당장 시행을 고민해야 하는 경제학적 논리
- 금투세를 지금 시행하면 안 되는 이유
- 자본이득세가 주식시장의 주가 총액에 미치는 영향 분석 내용
- 금투세에 대한 다른 대안
- 마지막 시행에 대한 제언까지 모두 동의함

IV. 보충 의견 - 부정적인 의견 개선

① 경기 침체기에서 투자 시장 전반의 자금 이탈 우려

- 2년 전 '금투세' 유예 결정 때와 비교하여 2024년 현재 세계 경제가 크게 호전된 것은 아직 없음
 -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전쟁 중, 중동갈등(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란 등)은 심해지고 있고, 미국은 연초 금리 인하 전망과는 달리 인상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
 - 2024년 역시 여전히 경제침체를 예상하는 만큼 사소한 변수라도 시장에 큰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음. '금투세'가 이러한 뇌관으로 작동할 가능성

② '부자 증세'라는 명분과 실체는 다름

- 개정 원안은 '금투세'를 신설하고, 이후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
- 우리 주식시장은 '기관·외국인의 놀이터'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이들은 비대칭적 정보에 기반한 상대적 강자임. 그런데도 오히려 거래세 인하 효과를 같이 누리면서 조세가 감면되고, 개인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과연 '부자 증세'인지?
 - 잘못하면, '기관·외국인의 거래세를 낮추고', 그로 인한 부족한 세수를 일부 개인들에게 부담시켜서 세수를 보전하는 꼴이 됨
 - 특히, 우리의 주식시장에서 기관·외국인은 '단타'를 즐기는데, 증권거래세가 줄어들거나 사라지면 이들은 오히려 매매횟수에 따라 증가하는 증권거래세를 감면받

게 되며, '단타적 접근'이 더욱 손쉬워짐

- '단타'는 투기적 성향이 강한 만큼, 건전한 투자문화 장려라는 원칙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

※ '금투세' 도입 여부에 따른 거래 주체별 과세

	기관	외국인	(대주주 아닌) 개인	(대주주) 개인
2024 현재	법인세+증권거래세 (면제받는 사례 있음)	조세협정에 따라 모국에 납부+증권거래세 (면제받는 사례 있음)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2025 금투세 시행 거래세 인하 시 (0.18%→0.15%)	법인세+증권거래세 (면제받는 사례 있음)	조세협정에 따라 모국에 납부+증권거래세 (면제받는 사례 있음)	금투세 [22%(3억 원 이하), 27.5%(3억 원 초과)+증권거래세	

※ 2024 법인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억 원 이하	9%	-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19%	2,000만 원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	21%	4억 2,000만 원
3,000억 원 초과	24%	94억 2,000만 원

- 대주주 지분율('23.1.1.~'23.12.31. 양도분) 코스피(1%)·코스닥(2%)·코넥스(4%) 이상 이거나, 시총 10억 원 이상일 경우, 세율(지방세 포함)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2%, 3억 원 초과 27.5%임. 중소기업 외 대주주로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할 경우 33%의 세율이 적용
 - 3억 이하는 개인투자자는 22%인데, 법인은 2억 이하 9%,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19%의 세율을 적용받음
 -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개인투자자는 27.5%, 기관투자자는 19~24%의 법인세를 적용받음
 - 법인세는 정책적 차원에서 감면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비용처리를 통한 세금공제를 노려볼 수도 있지만, 근로소득세만 해도 법인세보다 최고세율이 훨씬 높음
- 일반적으로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은 이유는 법인세를 낸 후의 이익을

개인이 가져올 때 다시 세금을 내기 때문임

- 외국인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자국 조세 기준에 따라 자국 정부에 세금을 내므로 '금투세'와 관련이 없음
 - 게다가 기관과 외국계 투자은행(IB) 등은 증권거래세도 면제 조항들 때문에 각종 특례로 면제받는 경우가 있음
- ※ 연간 주식 총매도액에서 개인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3% 정도이지만, 증권거래세 연간 부담액 중 개인투자자의 부담비율은 약 70%를 차지

③ 펀드 시장에 대한 다른 잣대와 이탈 요인

- 「금융투자소득세법」에 따르면 사모펀드의 이익금은 주식매매수익까지도 '금투세'가 아니라 '배당소득세'로 분류되어 세금폭탄을 맞게 되고, 기본공제도 흔히 '대부분 사람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명분의 5,000만 원이 아니라 통합된 250만 원으로 개인투자자나 공모 펀드보다 약 20배 정도 적어짐
- 즉, 사모펀드 투자자들은 이익의 약 50%를 정부에 세금으로 내고, 거기다가 남은 이익의 약 10~20%를 운용사에 성과보수로 내야 한다는 것임
 - 이렇게 되면 결산기간인 6개월마다 이익의 70%가 사라지는 것이어서 투자자들 처지에서는 사모펀드에 투자할 요인이 사라짐
 - 따라서 '금투세'가 실시되면 투자자들의 대규모 '펀드 런'이 발생하여 사모펀드 시장이 붕괴하여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가능성도 있음

④ 채권·국내상장 포함 해외주식에 대한 다른 잣대

- 민주당 모 의원은 "5,000만 원을 버는 자산가들은 소수 부자"이고, "실제 2개 이상 증권사를 합쳐 5,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낸 투자자는 그리 많지 않다."고 주장함
- 그러나 5,000만 원이라는 한도는 순수하게 '국내 상장사 주식'으로만 이득을 낸 경우를 의미하며, 채권(회사채, 국채) 및 해외주식, 국내에 상장된 해외투자 상품(해외지수 ETF 등) 등의 '2그룹'의 경우 해당 한도는 2그룹에 포함된 모든 상품의 수익을 총합하여 단 250만 원에 불과함
 - 즉, 5,000만 원 공제를 적용받는 1그룹의 경우, 전체 투자자대비 '금투세' 대상자가 소수일 수 있으나, 250만 원 공제를 적용받은 2그룹의 경우 전체 투자

자대비 소수가 아닐 수 있음

-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의 채권 순매수액은 (2021년: 4조 5,675억 원→2022년: 20조 6,113억 원→2023년: 37조 5,620억 원)으로 급증
 - 투자자가 채권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이자 수익, 자본 차익, 만기 상환 이익임
 - 현재는 채권의 이자 수익에 대해서만 15.4%의 이자소득세를 부과하고, 자본 차익과 만기 상환 이익에는 조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금투세'가 도입되면, 자본 차익과 만기 상환 이익에도 과세됨
 - 채권과 해외주식, 파생상품 등 기타 금융상품을 모두 포함해 250만 원을 기본 공제한 뒤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차익은 20%(지방세 포함 22%), 3억 원 초과 차익은 25%(지방세 포함 27.5%)의 세금을 부과

⑤ 핵심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시장 이탈 우려

- 찬성측에서는 '금투세'는 상위 1%에만 해당하는 세금이라 주장하지만, 개인투자자 상위 0.5%가 보유한 지분이 전체 개인 지분의 50%에 육박하여, 금투세를 과세하면 시장에 충격이 불가피함
 - 세계화에 따라 주식시장 간의 일종의 자금유치 경쟁이 일어나는데, 우리 주식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고, 기존에 형성된 기업문화 및 상속세 회피를 위한 낮은 주주환원율로 인해 경쟁력이 높다고 볼 수 없음
 - 반면에 가장 투자하기 좋은 미국 주식시장의 경우, 국제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애플, 테슬라 등의 수많은 매력적인 기업이 있고, 특히 주주환원율이 대한민국 지난 10년간 평균 주주환원율이 28%이며, 반면 미국의 경우 89%로 약 3배가량이 차이 남.
 - 이들은 주주의 환원을 주주들에게 큰 폭의 배당을 나눠주어 주주들의 현금흐름을 돕거나, 자사주를 매입하여 소각, 시중의 주식의 수를 줄여 주식의 가치 즉 주가를 부양하는 방법으로 환원함
 - 따라서 우리 주식시장과 미국 주식시장이 엇비슷한 세율을 가져간다면 당연히 이러한 이유로 미국 주식시장으로 투자가 쏠리지 않겠냐는 것임
 - '금투세' 시행 시 공제 한도는 국내 주식이 유리하지만, 거래세(농특세 포함)는 국내 주식 0.15%(인하 예정), 미국 SEC fee 0.00278%로 오히려 국내 주식이 세율이 더 높음

- 1억 원 거래 시 국내 주식은 거래세 15만 원인데 비해, 미국 주식은 2,780원임
-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은 원래부터 소위 말하는 '큰 손' 또는 '고래'라는 사람들이 수급을 움직이는 경향이 큰데, 이들이 세금회피 목적으로 이탈하는 경우 장 전체가 내려앉을 수 있다는 불안도 있음
- 현재도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위한 매도가 이루어지는 만큼, 분명히 금투세를 회피하기 위한 매도가 나올 것이고 이것이 시장의 하락을 부추기리라는 것임

⑥ 국부 해외 유출과 부동산 유입 촉진

-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내 증시에 투자한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부동산으로 유입될 수 있음
 - 금투세 도입 전까지는 대주주 양도세 매도를 제외하고는 국내 주식시장이 해외 주식시장보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적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있음에도 국내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많았는데, 금투세 도입 시 국내 주식과 해외주식이 공제액을 제외하면 세율이 같아짐
 - 특히, 2024년 4월 기준 미국 빅테크 5개 종목(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개별 주식의 시가총액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보다 높을 정도로, 국내 주식이 해외주식보다 매력이 떨어지며 미국 주식은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가치 향상에 매우 적극적임
 - 해외주식보다 세금혜택이 없으면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이 국내시장보다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해외시장으로 몰릴 수 있으며, 환율도 상승(=원화 가치 하락) 할 가능성이 큼
- 지난 2021년 파이터치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식양도세율의 변화율이 1%P 인상될 시 주택가격 변화율이 0.18%P 상승했음
 - 이 결과를 적용하면, 주식양도세율 20% 부과 시 주택가격이 약 73% 상승하게 됨

⑦ 세수 확보로서의 실효성 미비

- '금투세'는 국내 주식에서는 5,000만 원 이상 벌어야 내는 세금이고, 기존 거래세는 매도 때마다 내는 세금임

- 세수를 확보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개인의 실력에 의존하는 금투세보다, (개인의 수익보다는 증시 전체의 거래대금 동향을 살피는 게 훨씬 쉬우므로) 매도 때마다 과세하는 거래세가 훨씬 안정적이고 세수 예측이 쉬움
- 만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나 코로나 초기 확산 사태 때처럼 전체 시장이 침체에 빠지면, 5,000만 원 이상 번 투자자의 수는 줄어들게 됨
 - 특히, 대만에서 금투세를 도입했다가 폭락한 선례가 있는 만큼, 금투세 도입 시 5,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낸 투자자 자체가 줄어들어 정작 세금은 덜 걷히고, 주식시장에만 악영향을 줄 수 있음
-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주식시장이 침체에 빠지자 거래세 수입이 3조 9,527억 감소하였음
 - 반면, 금투세 시행 시 연간 세입 예상액은 3년에 4조(매년 평균 1.34조) 또는 1년에 1.5조 정도임. 금투세를 걷었다가 개인투자자, 특히 큰손이 부동산이나 해외주식으로 이탈해 금투세로 걷는 세금보다 거래세 수입 감소가 더 클 수 있음
- 절세를 위해 연말에 국내 주식 공제 상한선인 5,000만 원까지만 수익을 내고 매도한 그다음 해에 다시 매수할 경우, 금투세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없지만, 연말에 변동성을 키우고 주식 하락만 시키는 악영향만 주게 됨
 - 이미 연말마다 대주주 양도세 회피 매도 폭탄이 쏟아지는 부작용이 있는데, 여기에 금투세 회피 물량까지 더해지는 것임

⑧ 단타 투자자대비 장기 투자자의 불평등한 손해

- 금투세 관련 손실 보전 기간은 5년밖에 되지 않으며, 매년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므로, 몇 년간의 장기 투자로 인해 큰돈을 버는 방식은 오히려 손해임
 - 반면 개인투자자가 오히려 1년 단위의 이익을 자주 얻는 투자 방식을 가져가야 혜택을 볼 수 있음
 - 미국, 영국 등 금융선진국의 금투세에는 장기 투자자에 대한 공제가 존재함
 - 따라서 금투세 도입 이후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장기 투자는 단기투자보다 전혀 매리트가 없음.